

의안번호	2219357
의 퇴 인	오세희 의원
회 답 일	2026. 9. 1.
추계번호	26A290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5조의2 신설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 소상공인 단체는 거래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제외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제1항) ○ 제1항에 따라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함(제2항)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 3. 그 밖에 소상공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제1항에 따라 단체협상을 요구받은 자는 단체협상을 요구한 모든 소상공인 단체와 성실히 협상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3항) ○ 소상공인 단체는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4항) ○ 제1항에 따른 단체협상권의 내용, 제3항에 따른 단체협상을 요구받은 자의 의무 및 제4항에 따른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재량 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신설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미대상 －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의 단체협상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35조의2제4항 신설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거래조건의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 단체가 단체협상을 요구받은 자의 성실협상의무 등 위반 행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제외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안 제35조의2제1항),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함(안 제35조의2제2항)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3. 그 밖에 소상공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또한, 개정안은 단체협상을 요구받은 자가 단체협상을 요구한 모든 소상공인 단체와 성실히 협상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35조의2제3항), 소상공인 단체가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4항)

- 개정안의 시행으로 단체협상권을 가진 소상공인 단체가 그 상대방의 위반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 업무 수행에 따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향후 조정 신청 건수와 조정의 구체적인 절차·방식 등을 현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여부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와 지방청 소상공인 담당 부서의 인력 및 인건비·기본경비 예산을 활용하여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으로, 이 경우에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손희정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손희정	02-6788-3750	hjson87@assembly.go.kr